한국금융학회-한국금융정보학회 공동 심포지엄

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산분리 규제: 토론문

2021. 11. 18.

법무법인(유) 광장 강준모(joon.kang@leeko.com)

Lee & Ko 법무법인(유) 광장

금융산업과 플랫폼

✓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은 '중개' = (온라인)플랫폼의 기본적인 기능

- 금융의 주요 기능: 지급 결제 기능, 자금 조달 기능, 자금 이전 기능, 정보 제공 기능, 리스크 관리 기능, 유인문제 완화 기능…

  → 경제 내에서 많은 기능을 담당하지만, 단순화시켜서 보면 '중개자'의 역할
- 심지어, 최근 일반적인 플랫폼에 요구되고 있는 '상호운용성'을 충족시키고 있고, '이용자 보호 의무'를 매우 강하게 부과해온,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구조

✓ 단순화시켜보면, 금융-플랫폼 갈등은 전통산업-플랫폼 갈등과 유사

- 택시/대리운전 등 모빌리티(카카오T), 부동산(네이버 부동산), 법률서비스(로톡) 등
- 플랫폼 기업은 중개에 특화되어 BM을 만들어온 기업들. 심지어 (전통적) 중개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 → 시지력 남용의 폐해를 제어한다면,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함. 이는 금융산업에서도 성립
- 전통산업은 규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 → 전통산업의 틀 안에서 플랫폼 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가?

금융산업과 플랫폼

✓ 규제가 없더라도, 금융기관과 플랫폼 기업의 직접 경쟁은 쉽지 않음

-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 베이스와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, IT 인프라, 데이터 처리 기술, 중개에 특화된 BM 등 모든 면에서 금융기관 대비 우위
  - 네트워크 효과, 범위의 경제, 기술적 우위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제를 포함한 금융시장에서도 점유율/지배력 확보가 용이
- 반면, 금융기관은 gatekeeper 역할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쉽지 않으며,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
  - (꽃배달) 올원뱅크 vs. 네이버 (음식배달) 신한은행 앱 vs. 배민/쿠팡
  → 각 '생활플랫폼'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은행 앱을 열 것인가?
  - (오프라인) 위치+결제 데이터 (온라인) 검색+결제 데이터
  → 결제 데이터 자체는 소비자의 최종 선택을 보여주지만, 선택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활용에 한계

➔ 금융산업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금융기관에 경쟁/혁신압력을 줄 수 있으나, 반대 방향의 경쟁압력은 제한적

플랫폼 기업과 금융 규제

✓ 동일 기능-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 가능한가?

- 금융산업 내에서 빅테크의 역할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동일한가?
- 인터넷 은행을 소유한 카카오, KT, 토스를 제외하면 지급결제를 제외한 대부분은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(1주제 발표자료, p.11)
  →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현상 발생
- 그러나, 플랫폼이 판매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상품 비교나 정보 제공, 채널 제공 등의 역할에 국한되고, 실제적인 판매 계약은 아웃링크의 형태로 개별 금융사에서 진행된다면, 동일 기능-동일 규제에서 '동일 기능'이 성립하는지 판단 필요
- 또한, 외형적으로는 금융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, 기능 간의 연계 가능성이나 역할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맞는 차등적인(완화된) 규제 적용
  → 가령, 후불결제가 '여신'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,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것과 규모의 차이가 있거나, 미수금 채권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있다면, '동일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?
- 다만,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 관련 기능이 늘어날수록, 규제의 수준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

플랫폼 기업과 금융 규제

✓ 플랫폼 규제 강화와 금융 규제

-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: 플랫폼 중개서비스 계약서에 검색/배열 기준, 거래에 발생한 손해 분담기준 등 명시
- 전자상거래법: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하여 검색순위 주요결정 기준 표시, 맞춤형 광고 제공시 고지, 플랫폼 운영서비스 사업자의 실제 수행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 및 외관책임 강화
-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: 콘텐츠 등 노출순서 결정기준 공개 등
- 전기통신사업법: 대형 플랫폼 사업자 M&A시 인가 제도
- 금융소비자보호법: 금융상품 판매대리-중개업 등록제도
- 전자금융거래법: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,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, 관리감독체계 마련, 이용자 예탁금 보호 등

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규제로 충분하지 않은지, 오히려 발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우려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검토 필요